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영정보시각화능력 등 3개 종목을 신설하고,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등 3개 종목을 폐지하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계산기기사 등 일부 종목을 통합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사회조사분석사1급 등 47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의 응시자격 증명서류에 대한 심사 기준일을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개정하여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 통일(안 제14조제4항제1호 단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의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그 응시자격에 대한 심사 결과가 각자의 필기시험 응시일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 기준일을 ‘필기시험일’에서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개정하여 일치시킴.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폐지·통합 및 명칭 변경(안 별표 2)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다음 표와 같이 신설(3개), 폐지(3개) 및 통합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고, ‘금속재창호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의 위치를 ‘17 재료’ 분야에서 ‘14 건설’ 분야로 변경함.

구분	자격 명칭(중분류 번호)	시행일
신설	경영정보시각화능력(023)	2024. 1. 1.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166)	2026. 1. 1.
	바이오공정기능사(181)	2026. 1. 1.
폐지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162)	2026. 1. 1.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171)	2026. 1. 1.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202)	2026. 1.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통합	전자계산기기사(202)	컴퓨터시스템기사(202)	2026. 1. 1.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211)		
	통신선로산업기사(213)	정보통신산업기사(213)	2026. 1. 1.
	정보통신산업기사(213)		
	통신기기기능사(213)	정보통신기능사(213)	2026. 1. 1.
	통신선로기능사(213)		
명칭 변경	전자부품장착기능사(162)	표면실장장비기능사(162)	2026. 1. 1.
	생산자동화산업기사(162)	자동화설비산업기사(162)	2024. 1. 1.
	생산자동화기능사(162)	자동화설비기능사(162)	2024. 1. 1.
	금형제작기능장(167)	금형기능장(167)	2024. 1. 1.
	반도체설계산업기사(202)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202)	2026. 1. 1.
	전자계산기기능사(202)	임베디드기능사(202)	2026. 1. 1.
	정보처리기능사(213)	프로그래밍기능사(213)	2026. 1. 1.
	어로기술사(244)	어업기술사(244)	2024. 1. 1.

다. 국가기술자격의 소관 변경 등(안 별표 7)

‘전자계산기기능사’가 ‘임베디드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생산자동화산업기사’ 및 ‘생산자동화기능사’가 ‘자동화설비산업기사’ 및 ‘자동화설비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소관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신설 종목인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은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으로 함.

라.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8)

- 1) 사회조사분석사1급, 제품디자인(기사, 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설비기사, 금속재창호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교통기술사, 광산보안(기사, 산업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표면실장장비기능사(종전의 전자부품장착기능사), 자동화설비산업기사·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용접(기사, 산업기사), 정밀화학기사, 섬유(기사, 산업기사),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종전의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임베디드기능사(종전의 전자계산기기능사), 의료전자기능사, 컴퓨터시스템기사(종전의 전자계산기기사, 종전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종전의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통신산업기사(종전의 통신선로산업기사 포함), 정보통신기능사(종전의 통신기기기능사, 종전의 통신선로기능사), 수산제조기사, 축산(기사, 산업기사), 식육처리기능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토양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의 시험과목 범위나 과목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함.
- 2) 신설 종목인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바이오공정기능사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26. ~ 7.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일. 다만,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한다.
2.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별표 2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무분야(26)	종직무분야(61)	기술·기능 분야(502)					서비스 분야(34)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급	2급	3급	단일등급
		84	29	116	115	158	10	10	3	11

별표 2의 직무분야(26)란 중 “02 경영·회계·사무(4/25)”를 “02 경영·회계·사무(4/26)”로 한다.

별표 2 중 023 사무(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23 사무 (10)						비서	비서	비서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한글속기	컴퓨터 활용능력 한글속기		
								한글속기	경영정보 시각화능력

별표 2의 직무분야(26)란 중 “14 건설(6/100)”을 “14 건설(6/102)”로 한다.

별표 2 중 141 건축(2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1 건축 (31)					거푸집				
	건축구조								
	건축기계 설비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 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 시공		건축일반 시공					
	건축품질 시험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 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 창호				

별표 2의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 중 “생산자동화”를 각각 “자동화설비”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 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0)란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2 기계 장비 설비· 설치 (29)	건설기계		건설기계 설비	건설기계 설비					
		건설기계 정비	건설기계 정비	건설기계 정비	건설기계 정비				
			캐도장비 정비	캐도장비 정비	캐도장비 정비				
	공조냉동 기계		공조냉동 기계	공조냉동 기계	공조냉동 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 설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표면실장 장비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자동화설비	자동화설비				
					반도체설비 보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별표 2 중 166 자동차(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6 자동차 (9)					자동차보수 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 차체수리				
	차량								
			그린 전동자동차						
					이륜자동차 정비				

별표 2 중 167 금형·공작기계(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7 금형· 공작 기계 (7)	금형				금형				
		금형							
			사출금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직
무분야(26)란의 개정규정 중 “17 재료(5/37)”를 “17 재료(5/34)”로 한다.

별표 2 중 171 금속·재료(17)란 및 172 판금·제관·새시(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1 금속· 재료 (16)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시험				
	금속제련								
	세라믹								
		압연			압연				
					열처리				
		제강			제강				
		제선			제선				

					측로				
172 판금· 제관· 새시 (3)		판금 제관		판금 제관	판금 제관				

별표 2의 직무분야(26)란 중 “18 화학(2/12)”을 “18 화학(2/13)”으로 한다.

별표 2 중 181 화공(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1 화공 (10)			정밀화학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학분석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바이오공정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직무
분야(26)란의 개정규정 중 “20 전기·전자(2/38)”를 “20 전기·전자(2/36)”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
규정 중 202 전자(2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 전자 (20)			광학						
				광학기기					
			로봇기구개 발						
			로봇소프트 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 개발						
				반도체커스텀 레이아웃					
	산업계측제 어								
			의공	의공					
					의료전자				
			임베디드		임베디드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전자응용								
					전자카드				
				3D프린터 개발					
					3D프린터				

					운용				
--	--	--	--	--	----	--	--	--	--

별표 2의 직무분야(26)란 중 “21 정보통신(3/31)”을 “21 정보통신(3/29)”으로 한다.

별표 2 중 211 정보기술(15)란 및 213 통신(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11 정보기술 (15)									게임그래픽 전문가
									게임기획 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 전문가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사무 자동화					
			컴퓨터 시스템						
	정보관리								
					정보기기 운용				
			정보 처리	정보 처리	프로그래밍				
	컴퓨터시스 템응용								
213 통신 (8)			전파전자 통신	전파전자 통신	전파전자 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설비							

별표 2의 24 농림어업(4/39)의 244 어업(7)의 기술·기능분야(511)의 기술사란 중 “어로”를 “어업”으로 한다.

별표 7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통신설비, 통신선로, 통신기기”를 “통신설비”로,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제어”를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로, “빅데이터분석”을 “빅데이터분석,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한다.

별표 7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설비보

전, 전자부품장착”을 “설비보전”으로, “금형, 금형제작”을 “금형”으로, “금속재료시험, 재료조직평가”를 “금속재료시험”으로, “반도체설계”를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으로,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계산기제어”를 “전자상거래관리사”로, “이러닝운영관리사”를 “이러닝운영관리사, 자동화설비, 바이오공정, 표면실장장비”로 한다.

별표 7의 고용노동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설치·해체”를 “설치·해체, 경영정보시각화능력”으로 한다.

별표 7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공간정보융합”을 “공간정보융합, 이륜자동차정비”로 한다.

별표 7의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수산양식”을 “수산양식, 어업”으로 한다.

별표 7의 비고 중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를 “사무자동화”로 한다.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 중 “02 경영·회계·사무(4/25)”를 “02 경영·회계·사무(4/26)”로 한다.

별표 8 중 021 경영(6)의 사회조사분석사1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조사분석사1급	필기시험	1. 조사기획과 조사방법 설계 2. 조사와 자료처리의 관리 3. 통계분석과 응용
	실기시험	사회조사분석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023 사무(9)”를 “023 사무(10)”로 한다.

별표 8의 023 사무(10)[종전의 023 사무(9)]의 한글속기3급란 다음에 경영정보시각화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	필기시험	1. 경영정보 일반 2. 데이터 해석 및 활용
-----------	------	------------------------------

	3. 경영정보시각화 디자인
실기시험	경영정보시각화 실무

별표 8 중 082 디자인(11)의 제품디자인기사란, 제품디자인산업기사란,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란, 시각디자인기사란, 컬러리스트기사란 및 컬러리스트산업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디자인기사	필기시험	1. 제품디자인 2. 인간공학 3. 디자인 재료 및 모형 제작관리 4. 제품 마케팅 전략
	실기시험	제품디자인 계획 및 실무
제품디자인산업기사	필기시험	1. 제품디자인 2. 인간공학 3. 디자인 재료 및 모형 제작관리
	실기시험	제품디자인 계획 및 실무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필기시험	제품디자인, 3D모델링, 디자인 재료, 모형 제작
	실기시험	제품응용모델링 실무
시각디자인기사	필기시험	1. 시각디자인 기획 2. 시각디자인 전략 3. 시각디자인 제작 4. 시각디자인 관리
	실기시험	시각디자인 실무
컬러리스트기사	필기시험	1. 색채디자인 계획 2. 색채디자인 전략 3. 조색 및 색채관리 4. 색채디자인 제작
	실기시험	색채기획 실무
컬러리스트산업기사	필기시험	1. 색채디자인 계획 2. 색채디자인 전략 3. 조색 및 색채관리 4. 색채디자인 제작
	실기시험	색채기획 실무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 중 “14 건설(6/100)”을 “14 건설(6/102)”로 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41 건축(29)”을 “141 건축(31)”으로 한다.

별표 8 중 141 건축(31) [중전의 141 건축(29)]의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란 및 건축설비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시험	건축계획 및 설계도면 작성
	실기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실무
건축설비기사	필기시험	1. 건축설비계획 2. 건축설비설계 3.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일반 4. 건축설비 관련법규
	실기시험	건축설비설계 및 시공 실무

별표 8 중 141 건축(31)[중전의 141 건축(29)]의 건축도장기능사란 다음에 금속재창호기능사란 및 플라스틱창호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속재창호기능사	실기시험	금속재창호 실무
플라스틱창호기능사	필기시험	창호시공 도면파악, 창호시공 현장안전, 부재가공 및 제작, 창호 설치
	실기시험	플라스틱 창호 실무

별표 8 중 144 도시·교통(5)의 교통기술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통기술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교통계획, 교통경제, 교통류이론, 교통조사, 교통운영 및 설계, 교통안전 및 환경, 그 밖에 교통공학에 관한 사항
-------	-------------	---

별표 8 중 151 채광(9)의 광산보안기사란, 광산보안산업기사란, 화약류관리기사란, 화약류관리산업기사란 및 화약취급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광산보안기사	필기시험	1. 광산조사·개발 2. 채광·발파작업 3. 광산시설·장비 4. 광산안전·광해방지
	실기시험	광산보안 실무
광산보안산업기사	필기시험	1. 광산조사·개발 2. 채광·발파작업 3. 광산시설·장비 4. 광산안전관리
	실기시험	광산보안 실무
화약류관리기사	필기시험	1. 화약류 일반 2. 발파 설계 및 작업

		3. 암반 굴착 및 시공 4.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실기시험	화약류 취급 및 발파 작업 실무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필기시험	1. 화약류 일반 2. 발파 설계 및 작업 3.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실기시험	화약류 취급 및 발파 작업 실무
화약취급기능사	필기시험	화약, 발파 작업 및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실기시험	화약 취급 및 발파 작업 실무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중 직무분야(61)란의 개정규정 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0)”를 “162 기계장비설비·설치(29)”로 한다.

별표 8의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의 자격종목란 중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란을 삭제한다.

별표 8의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의 자격종목란 중 “전자부품장착기능사”를 “표면실장장비기능사”로 하고, 같은 표 중 표면실장장비기능사란(중전의 전자부품장착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면실장장비기능사	필기시험	SMT 일반, 전자 및 제어, 공기압
	실기시험	SMT장비 운용 실무

별표 8의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의 자격종목란 중 “생산자동화산업기사”를 “자동화설비산업기사”로, “생산자동화기능사”를 “자동화설비기능사”로 한다.

별표 8의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의 자동화설비산업기사란(중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란) 및 자동화설비기능사란(중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화설비산업기사	필기시험	1. 자동제어 2. 기계요소 설계 3. 공유압
	실기시험	자동화설비 실무
자동화설비기능사	필기시험	자동화요소 제어기술
	실기시험	자동화설비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66 자동차(8)”을 “166 자동차(9)”로 한다.
별표 8 중 166 자동차(9)[종전의 166 자동차(8)]의 자동차정비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166 자동차(9)[종전의 166 자동차(8)]의 그린전동자동차기사란 다음에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차정비기사	필기시험	1. 일반기계 및 열역학 2. 자동차엔진 3. 자동차새시 4. 자동차전기 5. 자동차검사
	실기시험	자동차정비·검사 실무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시험	이륜자동차 엔진, 전기장치, 새시, 동력전달장치, 안전·편의장치, 프레임, 전기오토바이
	실기시험	이륜자동차정비 실무

별표 8의 167 금형·공작기계(7)의 자격종목란 중 “금형제작기능장”을 “금형기능장”으로 하고, 같은 표 중 167 금형·공작기계(7)의 금형기능장란(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형기능장	필기시험	금형제작법, 금형설계, 기계재료 및 열처리, CAD/CAM, 측정, 공유압, 치공구,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금형제작 실무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의 개정규정 중 “17 재료(5/37)”를 “17 재료(5/34)”로 한다.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71 금속·재료(17)”를 “171 금속·재료(16)”로 한다.

별표 8 중 171 금속·재료(16)[종전의 171 금속·재료(17)]의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란을 삭제한다.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72 판금·제관·새시(5)”를 “172 판금·제관·새시(3)”로 한다.

별표 8 중 172 판금·제관·새시(3) [종전의 172 판금·제관·새시(5)]의 금속재창호기능사란 및 플라스틱창호기능사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중 174 용접(7)의 용접기사란 및 용접산업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용접기사	필기시험	1. 기계제작법 2. 용접야금 3. 용접설계·시공 및 재료역학 4. 용접일반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용접작업 실무
용접산업기사	필기시험	1. 용접야금 및 용접설비제도 2. 용접구조설계 3. 용접일반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용접작업 실무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 중 “18 화학(2/12)”을 “18 화학(2/13)”으로 한다.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81 화공(9)”을 “181 화공(10)”으로 한다.

별표 8 중 181 화공(10)[종전의 181 화공(9)]의 정밀화학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밀화학기사	필기시험	1. 공업합성 2. 반응운전 3. 단위공정관리 4. 정밀화학생산관리
--------	------	--

	실기시험	정밀화학제품 제조관리 실무
--	------	----------------

별표 8 중 181 화공(10)[종전의 181 화공(9)]의 바이오화학제품 제조산업기사란 다음에 바이오공정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이오공정기능사	필기시험	바이오 생산 및 품질관리 기초
	실기시험	바이오 생산 및 품질관리 실무

별표 8 중 191 섬유(8)의 섬유기사란 및 섬유산업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섬유기사	필기시험	1. 섬유소재 2. 섬유생산 3. 염색가공 4. 섬유시험
	실기시험	섬유생산 및 염색가공 실무
섬유산업기사	필기시험	1. 섬유소재 2. 섬유생산 3. 염색가공
	실기시험	섬유생산 및 염색가공 실무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의 개정규정 중 “20 전기·전자(2/38)”를 “20 전기·전자(2/36)”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의 개정규정 중 “202 전자(22)”를 “202 전자(20)”로 한다.

별표 8의 202 전자(23)의 자격종목란 중 전자계산기기사란을 삭제한다.

별표 8의 202 전자(23)의 자격종목란의 임베디드기사란 다음에 임베디드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베디드기능사	필기시험	전자회로 설계, 디지털 논리회로, 프로그램 구현
	실기시험	회로 및 프로그램 구현 실무

별표 8의 202 전자(23)의 자격종목란 중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란을 삭제한다.

별표 8의 202 전자(23)의 자격종목란 중 “반도체설계산업기사”를 “반도체 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로 한다.

별표 8의 202 전자(23)의 자격종목란 중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란(중전의 반도체설계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	필기시험	1. 반도체공학 2. 반도체 회로 설계 3. 집적회로 설계
	실기시험	반도체 레이아웃 설계 실무

별표 8의 202 전자(23)의 자격종목란 중 전자계산기기능사란을 삭제한다.

별표 8의 202 전자(23)의 자격종목란 중 의료전자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전자기능사	필기시험	의료기기 기초, 의료기기 제작, 의료기기 관리
	실기시험	의료기기 실무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 중 “21 정보통신(3/31)”을 “21 정보통신(3/29)”으로 한다.

별표 8의 211 정보기술(15)의 자격종목란 중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를 “컴퓨터시스템기사”로, “정보처리기능사”를 “프로그래밍기능사”로 한다.

별표 8 중 211 정보기술(15)의 컴퓨터시스템기사란(중전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란), 사무자동화산업기사란 및 프로그래밍기능사란(중전의 정보처리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컴퓨터시스템기사	필기시험	1. 운영체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	------	---------------------

		2. 컴퓨터 구조 3. 컴퓨터 프로그래밍 4. 디지털회로 및 데이터 통신
	실기시험	컴퓨터시스템 실무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시험	1. 사무자동화시스템 2. 프로그래밍일반 3. 네트워크일반
	실기시험	사무자동화 실무
프로그래밍기능사	필기시험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SW기초기술, SQL 활용, 정보시스템 기초기술
	실기시험	기초프로그래밍 실무

별표 8 중 211 정보기술(15)의 정보기기운용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시험	전자계산기 일반, 정보기기 일반, 정보통신 일반
	실기시험	정보기기 운용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13 통신(10)”을 “213 통신(8)”으로 한다.

별표 8 중 213 통신(8)[중전의 213 통신(10)]의 정보통신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213 통신(8)[중전의 213 통신(10)]의 정보통신산업기사란 다음에 정보통신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시험	1. 정보전송일반 2. 정보통신설비 3. 정보통신네트워크 4. 컴퓨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
	실기시험	정보통신 실무
정보통신기능사	필기시험	전기전자개론, 컴퓨터일반, 정보통신일반, 정보설비기준
	실기시험	정보통신 실무

별표 8 중 213 통신(8)[중전의 213 통신(10)]의 통신선로산업기사란, 통신기기기능사란 및 통신선로기능사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중 221 식품(7)의 수산제조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산제조기사	필기시험	1. 식품안전
--------	------	---------

		2. 수산화학 3. 수산가공학 4. 냉동냉장학
	실기시험	수산식품 제조 실무

별표 8 중 242 축산(5)의 축산기사란, 축산산업기사란 및 식육처리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축산기사	필기시험	1. 가축육종 2. 가축번식생리 3. 대가축 생산관리 4. 중소가축 생산관리 5. 사료생산 및 관리
	실기시험	축산 실무
축산산업기사	필기시험	1. 가축번식육종 2. 대가축 생산관리 3. 중소가축 생산관리 4. 사료생산 및 관리
	실기시험	축산 실무
식육처리기능사	필기시험	식육처리 및 품질관리
	실기시험	식육처리 실무

별표 8의 244 어업(7)의 자격종목란 중 “어로기술사”를 “어업기술사”로 한다.

별표 8 중 261 환경(22)의 대기환경기사란, 폐기물처리기사란, 토양환경기사란, 대기환경산업기사란, 소음진동산업기사란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대기환경기사	필기시험	1. 대기환경관리 2. 연소공학 3. 대기오염방지기술 4.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실기시험	대기오염관리 실무
폐기물처리기사	필기시험	1. 폐기물 개론 2.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기술 3. 폐기물 처분 기술 4. 폐기물공정 시험기준
	실기시험	폐기물처리 실무
토양환경기사	필기시험	1. 토양 및 지하수 특성 2. 토양 및 지하수 조사·평가 3. 토양 및 지하수 정화기술

대기환경산업기사	실기시험	4.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실무
	필기시험	1. 대기환경관리 2. 대기오염방지기술 3.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실기시험	대기오염관리 실무
소음진동산업기사	필기시험	1. 소음·진동 계획 2. 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 3. 소음진동 관계 법규
	실기시험	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 실무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시험	1. 폐기물 개론 2. 폐기물 처리 기술 3. 폐기물공정 시험기준
	실기시험	폐기물처리 실무

별표 9 제1호의 171 금속·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1 금속·재료	금속재료, 압연, 제강, 제선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제강, 제선, 압연
-----------	------------------	------	------	--------------------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9 제1호의 202 전자란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 전자	전자	광학, 의공, 임베디드, 로봇기구개발	광학기기, 의공, 3D프린터개발	의료전자
--------	----	----------------------	-------------------	------

별표 9 제1호의 21 정보통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정보통신	211 정보기술		빅 데이터 분석, 정보처리,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	정보처리, 정보보안	
	212 방송·무선		방송통신	방송통신	
	213 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별표 10의 141.건축란 중 “타일기능사”를 “타일기능사, 금속재창호기능사”로 하고, 같은 표 중 17.재료란을 삭제한다.

별표 11의4의 종목란 중 “이러닝운영관리사”를 “이러닝운영관리사, 경영정보시각화능력”으로 한다.

별표 14 중 육군의 정보통신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공군의 정보통신학교의 유선통신체계정비 부서관 초급란 및 정보체계관리부서관 초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통신학교	정보체계운용초급/ 정보체계운용중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프로그래밍기능사	초급반 및 중급반 모두 이수 시 면제
유선통신체계정비 부서관 초급	정보통신기능사		
정보체계관리부서관초급	프로그래밍기능사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 중 공군의 군수 1학교의 정밀측정장비정비 부서관 초급란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밀측정장비정비 부서관 초급	전자기능사 임베디드기능사
-----------------	------------------

별표 17 중 이러닝운영관리사란 다음에 경영정보시각화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	필기(과목당 100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100점)	70점 이상

별표 19의 244 어업란 중 “어로기술사”를 “어업기술사”로 한다.

별표 20 중 제1호의 202 전자란 및 213 통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2 전자	전자, 광학기기
--------	----------

213 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	--------------

별표 20 중 제2호의 202 전자란, 211 정보기술란 및 213 통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2 전자	임베디드, 전자
211 정보기술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213 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2.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및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4.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교통기술사,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수산제조기사 및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 국가기

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5. 별표 11의4,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

제2조(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교통기술사, 자동화설비산업기사(종전의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기능사(종전의 생산자동화기능사), 금형기능장(종전의 금형제작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수산제조기사 및 어업기술사(종전의 어로기술사): 2024년 1월 1일
2. 사회조사분석사1급,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 금속재창호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설비기사,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표면실장장비기능사(종전의 전자부품장착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용접기사, 용접산업기사, 정밀화학기사, 섬유기사, 섬유산업기사,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종전의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임베디드기능사(종전의 전자계산기 기능사), 의료전자기능사, 컴퓨터시스템기사(종전의 전자계산기기사,

종전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프로그래밍
기능사(종전의 정보처리기능사), 정보통신산업기사(종전의 통신선로
산업기사 포함), 정보통신기능사(종전의 통신기기기능사, 종전의 통
신선로기능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식육처리기능사, 대기환경
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토양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
업기사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 2026년 1월 1일

제4조(시험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및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국
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해당 국
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및 고용노
동부령 제36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의 개정규
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교육훈련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5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
다.

전자계산기기사	컴퓨터시스템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기기기능사	정보통신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 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2023년 12월 31일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동화설비산업기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자동화설비기능사
금형제작기능장	금형기능장
어로기술사	어업기술사

2. 2025년 12월 31일

전자부품장착기능사	표면실장장비기능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임베디드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프로그래밍기능사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표의 왼쪽

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 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8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또는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또는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9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1월 1일 당시 진행 중인 전자계산기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계산기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2024년 1월 1일 당시 진행 중인 생산자동화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생산자동화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험원서 등) ① ~ ③ (생략)	제14조(수험원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심사 의 기준일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 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로 한 다)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심사 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로 한다. 1. <u>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필기 시험일. 다만,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는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마 지막 필기시험일로 한다.</u> 2. <u>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실기 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 서 접수 마감일</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